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의 학술 교류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이하 '양 대학'이라 함)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 대학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내용) 양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

1. 교수 및 직원 교류
2.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3. 공동 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4.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등 학술정보 상호 교환
5. 기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2조(세부사항) 제1조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양 대학 각 실무부서장이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에 관한 별도의 이견이 없을시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4조(기타) 본 협약서의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양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7월 22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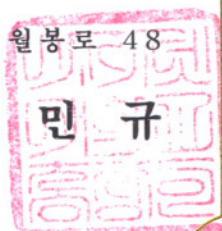
총 장 홍 덕 물



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E UNIVERSITY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총 장 신 민 규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의 학점 교류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이하 '양 대학'이라 함)가 체결한 학술교류협약서에 의거하여 양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학생교류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협약서는 양 대학 간 교류·수학하는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과목 이수) ① 양 대학은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강신청 공고기간(계절 학기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공고기간)에 상대방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대학의 총장은 학점교류 수학희망자를 개강 2주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수강대학의 총장은 추천된 교류학생에 대한 수학허가를 개강 1주전까지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④ 교류과목의 이수교과목 인정과 취득학점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4조(등록금) 교류대학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강료는 수강대학에 납부한다.

제5조(성적처리) 교류학생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소속대학의 수업관련 부서로 통보한다.

제6조(기타) ①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의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으며, 편의시설(도서관, 실험실습실, 기타 학생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책임을 진다.

- ③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양교의 수업담당 부서 총괄 책임자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④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본 협약서는 실무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7월 22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학원장 전 영 란

전 영 란

교무처장 함재용

함재용



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E UNIVERSITY

대학원장 이 회 능

이 회 능

교무처장 임호찬

임호찬